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70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 의 자 : 김태년 · 김한규 · 박홍근
허영 · 손명수 · 윤후덕
이연희 · 홍기원 · 이소영
전진숙 · 이강일 · 박희승
김성환 · 윤종균 · 민병덕
허종식 · 서영석 · 이정현
김성희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

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55條(橫領, 背任) ① (생 략) ②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 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 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 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 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u><단서 신설></u>	第355條(橫領, 背任)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다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 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 한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하지 아니한다.